

② 개정조문

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5조의6(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) ① 빈집(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, 공동주택 및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철 거 후 신축하여 취득[빈집이 사실 상 철거된 날(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 거된 날을 말한다)부터 3년 이내 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]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 도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 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 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 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</u></p>